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1129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협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11. 29.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2. 1. 2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1)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49808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0. 19. ‘C은 원고에게 4,964,617원 및 그 중 2,818,129원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채권의 2022. 4. 12. 기준 원리금 합계액은 10,523,966원(=원금 2,818,129원+7,705,837원)이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소10193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 5. 12. ‘C은 원고에게 32,732,632원 및 위 돈 중 10,244,122원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6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채권의 2022. 4. 12. 기준 원리금 합계액은 38,411,766원(=10,244,122원+28,167,644원)이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30032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8. 25. ‘C은 원고에게 6,492,229원 및 그 중 5,050,094원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채권의 2022. 4. 12. 기준 원리금 합계액은 19,063,530원(=5,050,094원+14,013,436원)이다.

나. C과 피고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은 2021. 11.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그 자녀들인 피고와 C, E이 있는데(상속지분: 피고 3/7, C, E 각 2/7), 피고와 C, E은 2022. 1. 2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는 2022.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무자력

한편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만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F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단독소유로 귀속시킴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C에게 C이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친정의 도움을 받아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취득하면서 그 형식적 명의만 망 D으로 하여 등기하였던 것으로 원래 피고 소유의 재산이고 C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

별지